

[별표 4]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제7조 및 제11조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건폐율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5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10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20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15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10	100분의 50이하
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 례가 정하는 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	제한 없음